

【의안번호 제263호】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 11. 울주군수

나. 의안회부 : 2024. 1. 12.

2. 개정 이유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의 감면 범위 확대 및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료 등 납부 및 감면대상 및 감면을 확대(안 제10조)

나. 부대시설 조명 사용료 신설 (안 별표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법제 및 규제심사: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없음

다. 입법예고: 2023. 12. 7. ~ 12. 27.(20일) 제출된 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 울주군 다자녀가정¹⁾ 중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 시 감면율과 풋살장 조명 이용료를 신설하여 인접지역 체육시설과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개정안 내용 검토

-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감면율 확대**(안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
 - 안 제10조제2항제2호는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100분의 50 감면적용 대상을 기존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감면율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제2항제3호는 부적절한 용어를(“그외의 연령 중 가입 여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음.

1)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울주군 출산장려지원조례 제2조제8호>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용료등 납부 및 감면 등) ① (생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p> <p>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u>전액</u></p> <p>2. <u>삭제 <2015.10.29></u></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u>100분의 50</u></p> <p>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u>100분의 20</u></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10조(이용료등 납부 및 감면) ① (현행과같음)</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u>다만</u>,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p> <p>1. <u>전액면제</u>: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p> <p>2. <u>100분의 50 감면</u></p> <p><u>가.</u>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u>나.</u>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u>라.</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u>다.</u>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p> <p>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p>

< 신 설 >

5.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그 외의 연령 중 가입여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 100분의 10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100분의 10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10

8.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100분의 10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

3. 100분의 10 감면

가.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다.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조문정비(안 제7조제3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1조,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안 제16조)
 - 안 제7조제3항, 안 제9조제3항, 안 제11조,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한자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고,
 - 안 제16조는 일반적 시행규칙 위임 조항으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삭제하였음.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발췌서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일반적 위임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을 받으면 위임명령인 대통령령을,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집행명령인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²⁹⁾

29) 현행법에 남아 있는 이러한 일반적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조항은 법령심사 과정에서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 |

○ 풋살장 조명(전기) 이용료 신설(안 [별표2])

- 안 [별표2]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부속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풋살장 조명 이용료를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부 대 시 설	피아노	1회 1대	20,000	부 대 시 설	피아노	1회 1대	20,000	
	무대조명	1회 2시간	30,000		무대조명	1회 2시간	30,000	
	특수전기료	1회 2시간	20,000		풋살장 조명	1시간	3,000	
	냉·난방	공연장	1회 2시간		50,000	특수전기료	1회 2시간	20,000
		교육실	1회 2시간		10,000	냉·난방	공연장	1회 2시간
	음향시설	1회 2시간	30,000		교육실	1회 2시간	10,000	
						음향시설	1회 2시간	30,000
	빔프로젝트	1회 2시간	10,000		빔프로젝트	1회 2시간	10,000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시설은 공연장에서의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각 1대 사용을 말한다.
 ○마이크 추가 시 1대당 무선10,000원, 유선 3,000원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특수전기료는 자가음향 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시설은 공연장에서의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각 1대 사용을 말한다.
 ○마이크 추가 시 1대당 무선10,000원, 유선 3,000원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특수전기료는 자가음향 시설 사용에 한정한다.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울주군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부대시설 (풋살장) 조명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다자녀가정 세대원은 100분의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 개정 조례안 제10조제2항제2호파목에서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중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100분의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고, 제10조제2항제3호나목에서는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100분의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울주군민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하고 있는 반면, 본 개정 조례안 제10조제2항제3호라목에서는 100분의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접지역 체육시설과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형평성 제고” 라는 본 조례 개정취지와 불부합함.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p>2. 100분의 50 감면</p> <p>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p> <p>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p> <p>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p> <p>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p> <p>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p>파.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p> <p>3. 100분의 10 감면</p> <p>가.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p> <p>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p> <p>다. 울산광역시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p> <p>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791 338 858 146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 분 의 50</td> <td data-bbox="858 338 1476 146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5.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7.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td> </tr> <tr> <td data-bbox="791 1462 858 160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 분 의 20</td> <td data-bbox="858 1462 1476 1608"> <p>울주군민이 체육시설내의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사용할 경우</p> </td> </tr> <tr> <td data-bbox="791 1608 858 179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 분 의 10</td> <td data-bbox="858 1608 1476 179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2. 울산광역시가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td> </tr> </table>	100 분 의 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5.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7.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0 분 의 20	<p>울주군민이 체육시설내의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사용할 경우</p>	100 분 의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2. 울산광역시가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100 분 의 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5.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7.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0 분 의 20	<p>울주군민이 체육시설내의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체육관, 다목적실 등을 사용할 경우</p>						
100 분 의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2. 울산광역시가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울주군민 						

○ 인접지역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의 감면대상이 동일하는데, 감면율이 상이한 이유와 울주군민에 대한 감면율 미적용 등 감면율 책정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